

## ■ 정책 동향 ■

## 공모펀드 활성화 추진

심희정 변호사 | 유정한 변호사

금융위원회는 2016년 4월 27일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가 다른 금융분야에 대해 성장이 부진한 점은 공모펀드의 낮은 수익률, 성과와 무관한 보수 수취, 부족한 정보 접근성, 비경쟁적 산업환경 등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요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고, 운용사가 펀드 손실을 우선 총당(후순위 투자)하는 경우 보다 높은 성과보수와 운용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투자대상자산 별로(증권펀드, 실물펀드) 그 특성에 따라 성과보수 수취 기준을 달리하여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를 선별적, 한시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투자자와 운용사 간에 펀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판매사의 펀드 판매 서비스 수준(창구판매 또는 온라인판매인지, 가입시 투자설명 여부, 펀드 관련 공시정보 전달 방법 등)에 따라 판매수수료·보수를 차별화하여 수취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이 사모펀드 운용사의 업무확대 및 진입규제를 완화시킨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사 인가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뉴스레터 정책동향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 추진」참조). 그리고 금융투자협회가 운영 중인 펀드 통합공시시스템이 전문가 위주로 설계되어 있고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투자자가 알고 싶어하는 수익률 및 펀드 비용 등을 중심으로 비교공시 전용 웹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펀드 판매채널 확대의 일환으로 서민금융기관(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우정사업본부 등)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펀드 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을 허용하고, 최근 투자자들이 원하는 손실제한형 펀드, 예금금리+@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공모펀드 출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일반투자자의 직접투자가 제한되는 사모펀드를 재간접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공모펀드의 파생상품 투자시 실제 위험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위험평가방식 개선 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공모펀드 활성화 추진방안은 세부 과제별로 2016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다운로드 :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